



2018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총175차-

【개최일시】 2018년 10월 31일(수) 16:00

【개최장소】 서울대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이사 8명(정원 9명) / 감사 1명(정원 2명)

출석이사: Bp. 유경춘, Fr. 박경근, Fr. 황경원, 오혜경, 심점섭, 정태호,
김명근, 김영주 (8명)

출석감사: 김기선 (1명)

배 석: Fr. 조용철(법인 부회장), Fr. 이광휘(사회사목국 부국장)
홍예진(우리집 공부방 시설장), 이현숙(시립고덕양로원 시설장)
김용주(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시설장), 법인사무국 담당관 10명

【의안상정】

제1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2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산하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제4호 의안 법인 임원 중임(안) 승인 요청의 건

【기타토의 및 보고사항】

1. 법인 산하 수탁시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김스흠(어르신공동생활가정) 사업
종료의 건
2. 법인 산하 수탁시설 시립고덕양로원 관련 보고
3. 법인 산하 수탁시설 시립여성보호센터 관련 보고

【폐회】

□ 개회 정족수 보고 및 개회선언

의장은 오후 4시 상임이사의 정족수 보고를 들은 후,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정관 제19조 제2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으로 개회를 선언하다.

□ 의장 유경춘 인사 말씀

바쁜 일정 중에도 본 법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자리해주신 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신임 이사 소개: 지난 제2차 임시이사회를 통하여 법인 신임이사로 선임된 **김영주 이사**에 대하여 간략한 인사·소개)

신임 김영주 이사(외부추천이사)님께서 본 법인 이사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향후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이 법인의 설립 이념을 우리 사회 안에서 바르게 구현해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해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등 총 4건의 상정 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자리이며 각 의안에 대하여 임원분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전차 이사회회의록 확인

의장은 출석이사에게 전차회의록에 대한 보완 수정할 부분의 유무를 묻고 출석이사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전차 회의록을 확정시킵니다.

의안심의

■ 제1호 의안 :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1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제1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시설은 법인 및 88개 시설이며 상정 의안에 대하여 임원분들께서는 「2018년 제3차 임시이사회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26개 시설	[참고] 법인 및 총 88개 시설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법인 및 55개 시설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7개 시설	

◎ 상임이사 박경근 : 먼저, 2018년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 승인을 요청해온 26개 시설 중 대표로 참석한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우리들의 공부방」의 홍예진 시설장께서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예산(A)	1차 추경 예산(B)	증감(B - A)		예산(A)	1차 추경 예산(B)	증감(B - A)	
					금액	%			금액	%
영유아 (11개)	수법	도 곡 어 린 이 집	1,165,927	1,187,108	21,181	1.8	1,165,927	1,187,108	21,181	1.8
	수법	동화나라어린이집	1,189,000	1,109,830	-79,170	-6.7	1,189,000	1,109,830	-79,170	-6.7
	수법	성모(논현)어린이집	1,093,447	1,083,270	-10,177	-0.9	1,093,447	1,083,270	-10,177	-0.9
	수법	송 화 어 린 이 집	627,970	631,957	3,987	0.6	627,970	631,957	3,987	0.6
	수법	쌍문2동어린이집	768,448	768,360	-88	-0.0	768,448	768,360	-88	-0.0
	수법	연 화 어 린 이 집	730,919	711,296	-19,623	-2.7	730,919	711,296	-19,623	-2.7
	수법	예다움보듬이나눔이 어 린 이 집	460,424	446,223	-14,201	-3.1	460,424	446,223	-14,201	-3.1
	수법	원 당 어 린 이 집	655,532	634,125	-21,407	-3.3	655,532	634,125	-21,407	-3.3
	작법	프란치스코어린이집	1,268,427	1,249,476	-18,951	-1.5	1,268,427	1,249,476	-18,951	-1.5
	수법	한 빛 어 린 이 집	507,595	510,433	2,838	0.6	507,595	510,433	2,838	0.6
	직	해 뜨 는 집	248,616	258,970	10,354	4.2	248,616	258,970	10,354	4.2
아 동 (3개)	수법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방과후교실	60,907	59,950	-957	-1.6	60,907	59,950	-957	-1.6
	수	솔바람복지센터	221,478	228,565	7,087	3.2	221,478	228,565	7,087	3.2
	직	우리들의공부방	241,168	217,044	-24,124	-10.0	241,168	217,044	-24,124	-10.0
노 인 (2개)	직	길현동성당데이케어센터	451,000	470,216	19,216	4.3	451,000	470,216	19,216	4.3
	직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438,565	458,080	19,515	4.4	438,565	458,080	19,515	4.4
장애인 (9개)	작법	다사랑공동생활가정	74,465	80,100	5,635	7.6	74,465	80,100	5,635	7.6
	작법	다향공동생활가정	58,355	61,767	3,412	5.8	58,355	61,767	3,412	5.8
	직	두레네공동생활가정	70,913	70,275	-638	-0.9	70,913	70,275	-638	-0.9
	작법	마로니에공동생활가정	84,002	85,290	1,288	1.5	84,002	85,290	1,288	1.5
	직	서로함께(청담) 공 동 생 활 가 정	91,678	92,548	870	0.9	91,678	92,548	870	0.9
	직	소라네공동생활가정	72,513	72,758	245	0.3	72,513	72,758	245	0.3
	직	연희네공동생활가정	53,860	55,064	1,204	2.2	53,860	55,064	1,204	2.2
	직	푸른보호작업장	253,891	274,769	20,878	8.2	253,891	274,769	20,878	8.2
	직	헬렌켈러의집 공 동 생 활 가 정 2 호	47,350	47,780	430	0.9	47,350	47,780	430	0.9
의 료 (1개)	직	요 셉 의 원	2,712,664	2,562,664	-150,000	-5.5	2,712,664	2,562,664	-150,000	-5.5
[구분보기] 수법 :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수 :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직·법 :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직 :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우리들의 공부방¹⁾」 흥예진 시설장이 보고를 마칩니다.]

1) 2015년 '지역아동센터'로 시설전환 신고를 완료한바 있으나,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단체 명칭변경 인준을 득하지 않아 이전 명칭 '우리들의공부방'이라 표기함. 관련하여 2018년 하반기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단체인준 등 절차를 통해 명칭변경 예정.

◎ 상임이사 박경근 : 다음은 2018년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법인사무국 부회장 Fr. 조용철께서 보고해주시고, 이어서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55개 시설 중 대표로 참석한 노인복지분야 「시립고덕양로원」의 이현숙 시설장께서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1차 추경 예산 (A)	2차 추경 예산 (B)	증감(B - A)		1차 추경 예산 (A)	2차 추경 예산 (B)	증감(B - A)	
					금액	%			금액	%
법 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7,455,912	7,681,572	225,660	3.0	7,455,912	7,681,572	225,660	3.0
중 합	수법	등작종합사회복지관	1,869,911	1,843,202	-26,709	-1.4	1,869,911	1,843,202	-26,709	-1.4
(6개)	수법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외	2,653,200	2,635,300	-17,900	-0.7	2,653,200	2,635,300	-17,900	-0.7
	수법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498,000	2,471,500	-26,500	-1.1	2,498,000	2,471,500	-26,500	-1.1
	수법	유락종합사회복지관	3,701,024	3,796,926	95,902	2.6	3,701,024	3,796,926	95,902	2.6
	수법	중곡종합사회복지관	2,384,830	2,383,234	-1,596	-0.1	2,384,830	2,383,234	-1,596	-0.1
	수법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외	3,600,255	3,563,435	-36,820	-1.0	3,600,255	3,563,435	-36,820	-1.0
영유아	수법	마 천 어 린 이 집	925,006	953,202	28,196	3.0	925,006	953,202	28,196	3.0
(7개)	수법	방 배 어 린 이 집	389,600	382,858	-6,742	-1.7	389,600	382,858	-6,742	-1.7
	작법	베들레헴어린이집	267,309	293,485	26,176	9.8	267,309	293,485	26,176	9.8
	수법	보 미 나 어 린 이 집	500,443	505,966	5,523	1.1	500,443	505,966	5,523	1.1
	수법	서초3단지어린이집	495,833	488,374	-7,459	-1.5	495,833	488,374	-7,459	-1.5
	수법	은 도 어 린 이 집	555,468	564,882	9,414	1.7	555,468	564,882	9,414	1.7
	수법	해 든 어 린 이 집	482,172	490,455	8,283	1.7	482,172	490,455	8,283	1.7
아 동 (1개)	직	셋별지역아동센터	75,046	79,180	4,134	5.5	75,046	79,180	4,134	5.5
노 인 (13개)	수법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	4,482,360	4,525,400	43,040	1.0	4,482,360	4,525,400	43,040	1.0
	수법	등작노인종합복지관 외	3,306,447	3,364,282	57,835	1.7	3,306,447	3,364,282	57,835	1.7
	작법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외	2,257,666	2,338,203	80,537	3.6	2,257,666	2,338,203	80,537	3.6
	직	강일성모노인요양원	3,107,762	2,925,347	-182,415	-5.9	3,107,762	2,925,347	-182,415	-5.9
	수법	서초노인요양센터	5,643,527	5,654,527	11,000	0.2	5,643,527	5,654,527	11,000	0.2
	수법	고 덕 양 로 원	2,475,992	2,043,226	-432,766	-17.5	2,475,992	2,043,226	-432,766	-17.5
	작법	고척동성당데이케어센터	390,000	415,000	25,000	6.4	390,000	415,000	25,000	6.4
	작법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	458,473	464,175	5,702	1.2	458,473	464,175	5,702	1.2
	직	금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399,159	400,459	1,300	0.3	399,159	400,459	1,300	0.3
	작법	시흥4동성당데이케어센터	400,222	402,882	2,660	0.7	400,222	402,882	2,660	0.7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1차 추경 예산 (A)	2차 추경 예산 (B)	증감(B - A)		1차 추경 예산 (A)	2차 추경 예산 (B)	증감(B - A)	
					금액	%			금액	%
노 인	작법	신당동성당데이케어센터	457,884	486,561	28,677	6.3	457,884	486,561	28,677	6.3
	작법	혜화동성당데이케어센터	573,529	547,816	-25,713	-4.5	573,529	547,816	-25,713	-4.5
	직	화곡본동성당데이케어센터	541,000	550,000	9,000	1.7	541,000	550,000	9,000	1.7
장애인 (22개)	수법	강 서 구 직 업 재 활 센 터	2,098,077	1,817,749	-280,328	-13.4	2,098,077	1,817,749	-280,328	-13.4
	작법	꿈손장애인단기거주시설	377,589	379,766	2,177	0.6	377,589	379,766	2,177	0.6
	직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66,583	66,836	253	0.4	66,583	66,836	253	0.4
	직	디 딘 자 리	1,964,249	1,962,247	-2,002	-0.1	1,964,249	1,962,247	-2,002	-0.1
	작법	루치아공동생활가정	82,799	89,062	6,263	7.6	82,799	89,062	6,263	7.6
	작법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355,094	376,489	21,395	6.0	355,094	376,489	21,395	6.0
	작법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224,561	233,241	8,680	3.9	224,561	233,241	8,680	3.9
	직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69,185	67,473	1,712	-2.5	69,185	67,473	1,712	-2.5
	직	비둘기주간보호시설	222,322	215,870	-6,452	-2.9	222,322	215,870	-6,452	-2.9
	작법	사 랑 손 보 호 작 업 장	535,527	539,390	3,863	0.7	535,527	539,390	3,863	0.7
	직	사 랑 손 주 간 보 호 센 터	235,454	216,449	-19,005	-8.1	235,454	216,449	-19,005	-8.1
	수법	서리풀주간이용센터	231,729	243,576	11,847	5.1	231,729	243,576	11,847	5.1
	직	성 빈 센 트 환 경 마 을	1,346,080	1,347,969	1,889	0.1	1,346,080	1,347,969	1,889	0.1
	작법	성 지 보 호 작 업 장	322,938	339,796	16,858	5.2	322,938	339,796	16,858	5.2
	직	신망애공동생활가정	83,188	85,410	2,222	2.7	83,188	85,410	2,222	2.7
	작법	신 망 애 의 집	396,094	392,680	-3,414	-0.9	396,094	392,680	-3,414	-0.9
	수법	중 구 장 애 인 복 지 관	1,823,524	1,959,318	135,794	7.4	1,823,524	1,959,318	135,794	7.4
	직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	70,294	69,985	-309	-0.4	70,294	69,985	-309	-0.4
	작법	햇 빛 자 리	253,713	251,640	-2,073	-0.8	253,713	251,640	-2,073	-0.8
	직	헬렌켈러의집공동생활가정	59,069	59,991	922	1.6	59,069	59,991	922	1.6
	작법	헬렌켈러의집단기거주시설	398,121	406,176	8,055	2.0	398,121	406,176	8,055	2.0
	직	헬렌켈러의집주간보호시설	196,299	195,044	-1,255	-0.6	196,299	195,044	-1,255	-0.6
여 성 (3개)	작법	마 음 자 리	695,029	711,146	16,117	2.3	695,029	711,146	16,117	2.3
	직	성 가 정 입 양 원	2,294,152	2,270,261	-23,891	-1.0	2,294,152	2,270,261	-23,891	-1.0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1차 추경 예산 (A)	2차 추경 예산 (B)	증감(B - A)		1차 추경 예산 (A)	2차 추경 예산 (B)	증감(B - A)	
					금액	%			금액	%
여 성	작법	화 해 의 집 씬 자 리	347,201	360,771	13,570	3.9	347,201	360,771	13,570	3.9
노수인 (2개)	수법	서울시여성보호센터	2,873,386	2,913,050	39,664	1.4	2,873,386	2,913,050	39,664	1.4
	작법	우 리 집 공 동 체	143,782	141,214	-2,568	-1.8	143,782	141,214	-2,568	-1.8
푸드 (1개)	수법	성 북 푸 드 마 켓	239,643	229,643	-10,000	-4.2	239,643	229,643	-10,000	-4.2
[구분보기] 수법 :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수 :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직·법 :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직 :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노인복지분야 「시립고덕양로원」 이현숙 시설장이 보고를 마칩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마지막으로 2018년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3차 세입·세출 추가정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7개 시설 중 대표로 참석한 장애인복지분야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의 김용주 시설장께서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제2차 추경예산(A)	제3차 추경예산(B)	증감(B - A)		제2차 추경예산(A)	제3차 추경예산(B)	증감(B - A)	
					금액	%			금액	%
노 인	수법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의 부	3,579,474	3,606,279	26,805	0.7	3,579,474	3,606,279	26,805	0.7
	(3개) 직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	523,126	502,194	-20,932	-4.0	523,126	502,194	-20,932	-4.0
	직	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493,024	498,116	5,092	1.0	493,024	498,116	5,092	1.0
장애인	작법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373,626	357,947	-15,679	-4.2	373,626	357,947	-15,679	-4.2
	(3개) 수법	서초한우리정문화센터 의 부	5,611,828	5,623,858	12,030	0.2	5,611,828	5,623,858	12,030	0.2
	수법	시 립 평 화 로 운 집	5,487,844	5,495,844	8,000	0.1	5,487,844	5,495,844	8,000	0.1
의 료 (1개)	수법	시 립 은 혜 로 운 집	2,592,646	2,557,490	-35,156	-1.4	2,592,646	2,557,490	-35,156	-1.4
[구분보기] 수법 :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수 :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직·법 :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직 :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장애인복지분야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의 김용주 시설장이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유경춘 : 제1호 의안의 승인 요청을 해온 시설들을 대표해 본 이사회에 함께해 주신 시설장들님께 감사드리며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1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1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2호 의안 : 법인 산하 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2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제2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분	[복지분야] 시설명	직책	임면사항				비고
			면 일자	면 성명	임 일자	임 성명	
수탁	[영·유아복지] 중구구립 다산어린이집	원장	2018.09.30.	이 화	2018.10.01.	염 숙	■ 순환 보직 (이 화 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 이에 따른 법인 내 산하 시설 시설장 내부 순환 보직 발령)
	[영·유아복지] 구로구립 해피어린이집	원장	2018.09.30.	염 ! 숙	2018.10.01.	우 희	■ 승진 발령 (염! 숙 원장의 순환보직 발령으로 인한 산하 시설 종사자 대상 승진발령-우 희 보육교사 前소속: 프란치스코어린이 집 보육교사(주임))
	[장애인복지]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센터장	2018.10.31.	성 선	2018.11.01.	위 경	■ 승진 발령 (성 선 센터장의 사직에 따른 법인 및 산하시설 종사자 대상 승진 발령-위 경 現소속: 법인사무국 교육·홍보팀 과장)

[※ 이하 p.8~p.13 인사기록카드 참조]

◎ **의장 유경춘** : 임원분들께서는 제2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2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2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의안 : 법인 산하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3호 의안인 법인 산하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제3호 의안인 법인 산하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 건입니다. 본 의안 자료는 정태호 이사님과 손창배 법인 자문노무사(現 법인 운영위원 활동 중)의 검토 및 법인 운영위원회(10.23.(화)) 자문 내용을 반영해 수정·보완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 **제정** : 2012년 제1차 임시이사회(2012.06.19. 개최) 「분야별 공통운영규정」 제정

[제1차] 개정 2015년 제1차 임시이사회(2015.05.29. 개최)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일부 개정

[제2차] 개정 2015년 제2차 임시이사회(2015.08.28. 개최)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일부 개정

[제3차] 개정 2018년 정기이사회(2018.02.23. 개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인사무국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 개정

■ 개정 사유

1. 기존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상 인사규정 제63조(해고의 예고) 제3항 제3호 ‘월급제 종사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단순위헌(2014헌바3 2015.12.23.)판결에 따른 삭제.
2. 기타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과 결핵예방법 등을 복지부 지침(보육사업안내)을 적법히 준용하고자 함.

■ 개정(안)의 각 영역별 주요 내용

영역별	개정(안) 주요 내용
1. 인사규정	■ 어린이집 현재 운영 상황 반영 제18조(구비서류)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 시 경력자에 한해 경력증명서 제출 제21조(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원본 2부 작성 제39조(평가시기) 정기평가 매년 12월 → 연1회 이상 실시 ■ 어린이집 직제에 맞게 변경(각 부서의 장 → 중간관리자)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영역별	개정(안) 주요 내용
2. 복무규정	■ 오기(誤記) 정정(불필요한 쉼표 삭제) ■ 중복 내용 삭제(제13조(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제19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반영 - 제19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소자 1주간 근로시간 한도 변경 - 제37조(임금의 구성항목)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신설 - 제71조(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에 따라 추가

※ 이하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개정(안) 본문 참조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본문

1. 인사 규정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18조(구비서류)① 채용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포함)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 자격증 및 면허증 지문(소지자에 한함) 5. 자기소개서 ② 전형결과 채용이 내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병역 증명) ————— 각 1부 2.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3. 채용 신체검사서(국공립 및 종합병원 등) ————— 1부 4.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제18조(구비서류)① 변동 없음 1, 2, 3, 4, 5. 변동 없음 6. <u>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u> ② 전형결과 채용이 내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 변동 없음 2. 채용 신체검사서(국공립 및 종합병원 등) ————— 1부 3.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 [변경] 이력서에 작성된 경력에 대한 확인
제21조 (근로계약) 원장은 수습기간 종료 후 수습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확정된 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u>사본1부</u> 를 교부한다.	제21조 (근로계약) 원장은 수습기간 종료 후 수습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확정된 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u>2부를 작성하여 원본1부</u> 를 교부한다.	■ [변경] 근로계약서 원본2부를 작성하고 있음
제39조 (평가시기) ① <u>정기평가는 매년 12월에 실시한다.</u> 다만, 인사관리상	제39조 (평가시기) ① <u>정기평가는 연1회 이상 실시한다.</u> 다만, 인사관리상	■ [변경] 어린이집 내 일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1. 인사 규정

현 행	개 정 (안)	사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소, 평가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변동 없음	록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
제51조 (인사위원회 개최 요구 및 통지) ① 각 부서의 장은 교직원이 규정 제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5. 29.>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고, 징계대상자에게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통지서를 송부한다.	제51조 (인사위원회 개최 요구 및 통지) ① <u>중간관리자</u> 는 교직원이 규정 제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5. 29.> ② 변동 없음	■ [변경] 어린이집 직제에 맞게 변경(각 부서의 장 → 중간관리자)
제63조 (해고의 예고) ① 어린이집은 교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어린이집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교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 종사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종사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6. 교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15. 05. 29.]	제63조 (해고의 예고) ①, ② 변동 없음 ③ 다음 각 호의 교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2 변동 없음. 3. 삭제 4. 5. 6 변동 없음.	■ [삭제] 단순위헌, 2014 헌바3, 2015. 12. 23. 반영

2. 복무 규정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13조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① 교직원 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교 직원이 합의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05. 29.> ②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교 직원의 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 1 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와 시간연장형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교직원의 대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 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5. 05. 29.>	제13조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① 변동 없음 ② 삭제 ③ 변동 없음	■ [삭제] 제19조 ①항 중복
제14조 (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 ① 교직원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은 각 직종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②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 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며, 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 ① 변동 없음 ②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 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며, 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 지 급으로 대체할 수 없다.	■ [삭제] 불필요한 쉼표 삭 제 ■ [신설] 보건복지부 지침 반영 (시행 2018. 07. 01.)
제19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 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교직 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교직원은 1일 1시간, 1주일 에 6시간을 한도로 교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교직원에 대하여는 1일 2 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 로 교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어린이집이 교직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제19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 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교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교직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교직원의 동 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교직원에 대 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교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교직원대표와	■ [변경] 근로기준법 제69 조(근로시간) 개정 반영 (2018. 03. 20.) ■ [삭제] 제1항과 제3항 중 복으로 인한 제3항 삭제

2. 복무 규정

현 행	개 정 (안)	사유
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08. 28> ② 어린이집은 교직원의 동의하에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08. 28> ③ 18세 미만 교직원은 1일 1시간, 1주 일에 6시간을 한도로 교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교직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교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신 중인 교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05. 29.]	서면 합의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08. 28> ② 변동 없음. ③ 삭제 ④ 변동 없음.	
제37조 (임금의 구성항목) ① 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임금외 호봉획정과 기본급 및 제수당의 지급액, 지급요건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및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③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보육교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37조 (임금의 구성항목) ①, ② 변동 없음 ③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근로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50% 가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변동 없음	■ [변경]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2항 신설 반영 (2018. 03. 20.)
제71조 (건강검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71조 (건강검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추가]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반영

2. 복무 규정

현 행	개 정 (안)	사유
1. 어린이집은 교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2. 일반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② 교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어린이집은 건강진단 결과 건강 보호자에게 요양의 권유, 전환배치, 일정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은 교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결핵 예방법에 의해 잠복 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3 변동없음. ②, ③ 변동없음.	

※ 이하 관련 변경 서식 [서식 5, 7, 8, 9]

[서식 5] 징 계 의 결 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징계협의를 인적사항</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소속</td> <td style="width: 15%;">직위</td> </tr> <tr> <td>의결사항</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으)로 의결한다.</td> </tr> <tr> <td>이유</td> <td colspan="3">※ 세부사항 별첨</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인사위원회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위원장</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위원</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위원</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위원</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위원</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간사</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able>	징계협의를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의결사항	(으)로 의결한다.			이유	※ 세부사항 별첨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서식 7] 징 계 재심의 결 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재심청구자 인적사항</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직급</td> <td style="width: 15%;">직위</td> <td style="width: 15%;">소속</td> </tr> <tr> <td>의결주문</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right;">(으)로 의결한다.</td> </tr> <tr> <td>이유</td> <td colspan="4">※ 세부사항 별첨</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인사위원회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위원장</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위원</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위원</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위원</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위원</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간사</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able>	재심청구자 인적사항	성명	직급	직위	소속	의결주문	(으)로 의결한다.				이유	※ 세부사항 별첨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징계협의를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의결사항	(으)로 의결한다.																																																																																										
이유	※ 세부사항 별첨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재심청구자 인적사항	성명	직급	직위	소속																																																																																							
의결주문	(으)로 의결한다.																																																																																										
이유	※ 세부사항 별첨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서식 8] 징계 처분 통지서				[서식 9] 징계 재심의 처분 통지서				
징계혐의자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재심청구자 인 적 사 항	성 명	직 급	직 위	소 속
의 결 사 항	(으)로 의결한다.			의 결 주 문	(으)로 의결한다.			
이 유	※ 세부사항 별첨			이 유	※ 세부사항 별첨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인사위원회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인사위원회				
※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규정 제 55조(재심신청)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유경춘** : 임원분들께서는 제3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3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으로 제3호 의안인 법인 산하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4호 의안 : 법인 「임원」 중임(안) 승인 요청 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4호 의안인 법인 「임원」 중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제4호 의안인 법인 「임원」 중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 「임원」 중임(안)			
임원구분	성 명	예정 임기	약 력
이 사	전 재 희 ()	2018. 12. 20. ~ 2021. 12. 20. (3 년)	■ 2010. 05. 보건복지부 휴먼네트워크협의회 공동위원장 ■ 2008. 08. ~2010. 08. 보건복지부 장관 ■ 2008. 05. ~2012. 05. 제18대 국회의원 ■ 2004. 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2000. 05. ~2008. 05. 제16대·제17대 국회의원 ■ 1994. 04. ~1995. 07. 제10대·제12대 광명시장
			※ 법인 이사 최초 선임일 : 2015. 12. 20.

◎ **의장 유경춘** : 임원분들께서는 제4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전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4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4호 의안인 법인 「임원」 중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기타 토의 건의 및 보고 사항

◎ **의장 유경춘** : 기타 토의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기타 토의 및 보고사항으로 총3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김스홈」(어르신공동생활가정) 사업종료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 한빛종합사회복지관 - 「김스홈」(어르신공동생활가정) 사업 종료 보고 건

▶ 「김스홈」 사업 개요

1.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였던 故 김 순 어르신이 死後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으로 故人처럼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해주기를 바라며 기증한 것임.
2. 故人의 유지를 받들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 오고 있으며 故人의 성과 이름의 약자를 따서 「Kim'ss Home(김사순 기금사업)」이라고 명명함.

▶ 「김스홈」 대상 부동산

소재지	규모(㎡)	전세기간	전세금액	전세권 당사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24-15 지하층 1호	벽돌조 38.88	2016. 07. 09. ~2018. 07. 09.	3,200만원	김 숙	본 회

▶ 세부 사업 내용

1. 2003년 12월 김 순 어르신 사망
2. 2004년 3월 초 김 레님, 정 임님 「김스홈」(서울시 양천구 신월 4동 523-28 지하 103호)에 거주 시작
▶ 당시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법인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명의로 전세권 계약서 작성
3. 2005년 본 회에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운영을 맡게 되며 이후에는 전세권 기간 만료 시 본 회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음. (위·수탁운영법인 변경: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 본 회)
4. 2007년 12월경 종래 「김스홈」 거주지를 이전하여 2018년 7월까지 거주
(서울시 양천구 신월 4동 523-28 지하 103호 ▶ 서울시 양천구 신월 7동 924-15 지하 제1호)
5. 최종 거주자이신 이 주님과 정 임님 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이 주님 퇴소 후 정 임님 혼자 거주하게 되었음.
▶ 이 주 어르신의 경우 개별세대에서 단독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였고,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임대주

5. 서울특별시청, 강남구청 담당자와 現 사안에 대하여 논의 진행 중.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해당 보고 건에 대하여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사무국에서는 해당 시설의 (서울특별시와) 위·수탁운영협약이 2019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을 고려하여 발생 민원이 순리대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 달라고 당부 하다.]

◎ 의장 유경춘 : 법인사무국 팀별 진행 업무 및 예정 업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팀별 진행 업무 및 예정 업무에 대하여 법인사무국 담당관들은 자료를 참조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무국 사회복지팀, 교육·홍보팀, 자원개발팀, 재무·행정팀, 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2018년 5월부터 10월 현재까지의 진행 업무와 2018년 12월 21일까지의 예정 업무 보고를 마친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본 회 법인사무국 진행 및 예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및 고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법인사무국 각 팀 담당관·담당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법인사무국과 산하 직영·수탁시설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 하다.]

의장은 금번 2018년 제3차 임시이사회(총175차)에 상정된 총4개 의안, [제1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2호 의안] 법인 산하 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산하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제4호 의안] 법인 「임원」 중임(안)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임원진의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승인하고,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마침기도로 영광송을 바치고 폐회를 선언하다.

【안내】 2018년 제4차 임시이사회 예정일 → 12월 21일(금) 16:00 서울대교구청 별관1층 대회의실

상기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유 경



상임이사

박 경



이 사

황 경



이 사

심 점



이 사

오



이 사

김



이 사

정



이 사

김



감 사

김

